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정

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

제2조(적용범위)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12. 1)

제3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4.12.19)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4)
 가. 제28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자 (신설 2020. 5. 7, 개정 2022.12.14)
 나. 선거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신설 2022.12.14)
 다.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복권된 자 (신설 2022.12.14)
 라.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자 (신설 2022.12.14)

제4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은 당해 선거 전년도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신규가입 회원은 당해 선거 전년도 6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2.12.26>, <단서신설 2016. 1. 1>, (개정 2017. 1. 1, 2020. 5. 7, 2024.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한 자는 면직 후 3년 이내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

③ 정관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신설 2017. 4. 17)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관 (개정 2023.9.19.)

④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이 규정 및 시도회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⑤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당해 선거년도에 선출된 시·도회장은 당해 선거년도의 회장 및 감사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신설 2024. 12. 19)

제4조의2(공정경쟁 의무) ①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하 "선거운동원"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타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비방 등 선거분위기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8. 12. 1)

② 선거운동원은 정상회원 중에서 후보당 10명 이내로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 개정 2016. 1. 1)

③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신설 2016. 1. 1)

제4조의3(직원의 선거중립의무) ① 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직원은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8. 12. 1, 개정 2010. 10. 26)

② 직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징계한다. (신설 2008. 12. 1)

③ 모든 회원은 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5. 7)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2. 1)

②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시·도회 선거사무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해 중앙회 선거 전년도 11월 1일 이전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 12. 26, 개정 2016. 1. 1)

제6조(위원회 존속기간)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선출에 대한 선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중앙회 선거관리(등록・투표・개표등)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고, 시·도회 선거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6. 1. 1)

② 선관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 규정과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관위는 회원관리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여부와 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선거 참여현황 통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 1)

④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시도회선거관리규정 등 선거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재발 또는 이 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시도회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관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5. 7)

⑤ 선관위는 제4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위반의 의도,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과거의 위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7)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와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는 별개로 한다.(신설 2020. 5. 7)

⑦ 선관위는 시・도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하여 선거 사무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9)

제8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등) ① 위원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1. 8, 2012. 12. 26)

1. 회장은 회원 중 2인을 추천한다.
2. 시・도회장 협의회의 장은 전・현직 시・도회장 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 (개정 2016. 1. 1)
3. 협의회(상주, 대행, 설계, 감리)의 장은 해당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12.12.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의 탈퇴 및 권리정지나 제명된 때.
2.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4. <삭제 2011.12.27>

④ 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여비지급규칙 별표1(임원)에 따른 출장비 또는 별표3 비고1(임원의 여비)에 따른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7, 2025. 7. 1)

제9조(위원장 및 간사등) ①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선관위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중앙회 기획관리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26, 2018.5.15)

⑤ 선관위는 선거사무종사원이 필요할 경우 협회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선거공고) ①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일 20일전 근무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1, 2012. 12. 26, 2016. 1. 1)

1. 선거일시.
2.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3. 후보등록 구비서류.
4. 합동소견발표회 개최 계획 (개정 2016. 1. 1)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예비후보자의 등록에 관하여 선거일 40일 전 근무일(해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까지로 한다)까지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9)

1. 예비후보자 등록 장소
2.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8, 2024. 12. 19)

제11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1)

제11조의3(입후보 자격)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5년이상 연속하여 정상회원인 자로서 중앙회 임원 또는 시·도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기의 경력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입후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6, 개정 2017. 6. 9)

1. 회원 중 회장 선거권이 없는 회원 30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1개 시·도회당 30인 이상 5개 시·도회이상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2중 추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
2. 제1호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중앙회 임원, 시·도회장, 대의원을 제외한 회원 중 선출총회 전년도말 기준 회비를 완납한 정상회원을 말한다. 단, 선출총회 전년도 7월 1일 이후 신규가입한 회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1, 2020. 5. 7, 2024. 12. 19)
3. 제1호의 추천시기는 후보등록마감일을 포함하여 이전 15일간으로 하며, 선관위는 추천시기 전에 추천서 양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5년이상 연속하여 정상회원인 자로서 중앙회 임원, 시·도회장 및 감사, 중앙회 운영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2.12.26)

제 3 장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제12조(후보자 등록등) ①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이력서(상벌사항 포함)
4.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대의원 추천용) (개정 2012.12.26)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1.12.27, 개정 2014. 12. 23)
6. 추천서(별지 제9호 서식, 선거권이 없는 정상회원 추천용) (신설 2012.12.26)
7.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 (신설 2016. 1. 1)

②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하되, 마감일이 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하며, 등록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 1. 1)

③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후 선관위가 입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장 및 감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1. 7. 19, 개정 2024. 12. 19)

1. 시·도부회장, 시·도회운영위원, 시·도회 감사
2. 대의원
3.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4. 정관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시ㆍ도조직 포함)의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서가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에서 발행한 사퇴확인서(사퇴일자 명기)를 후보자등록신청시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9)

⑥ 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제12조의2(기탁금) ① 회장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회장후보 5천만원, 감사후보 1천만원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1> (개정 2012.12.26, 2016. 1. 1,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은 유효투표 중 득표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총회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반환하되, 득표율이 20퍼센트 미만이거나 후보자등록 후 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귀속한다. <신설 2008.12. 1> (개정 2012. 12. 26, 2016. 1. 1, 2024. 12. 19)

③ <삭제 2024 12. 19>

제12조의3(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공고를 한 날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이력서에 상벌 사항 및 협회 가입된 기간과 경력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서식)

4.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3항에 따른 기탁금과 제2항의 제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예비후보자의 등록 무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후보자가 제12조에 따라 후보등록할 때 선거운동기간 전일까지 예비후보자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제10항에 따른다.

⑧ 예비후보자가 제12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⑨ 예비후보자가 사망 또는 대의원에게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을 못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전액이 협회에 귀속된다.

⑩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제작(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및 그 밖에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하여 선거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입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시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8)

1. 회장 : 15인 이상
2. 감사 : 10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2중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2중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후보자의 추천인수는 1개 시·도회에서 선거권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10.10.26, 2012.12.26)

④ 제1항의 추천시기는 후보등록마감일을 포함하여 이전 15일간으로 하며, 선관위는 추천시기 전에 추천서 양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

제14조(등록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가 미달된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03. 1. 8)
3. 제12조 등 후보자 등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7. 10. 31)

② 입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후보자가 처분 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 2.19, 2008.12. 1, 2016. 1. 1)

② 회장 또는 감사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1)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11조의3, 제13조 관련)
3. 통상적인 협회(중앙회 및 시·도회, 각 업역별 협의회 등) 활동
4. 경조사, 협회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5. 연말연시, 명절,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선거사무소 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행사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7)

가. 개최 3일전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을 별지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후보자별 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 1회에 한하며, 식사,기념품의 제공은 금지한다. 다만, 5천원 이하의 다과는 제공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선거과열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하여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소견발표회의 개최계획 및 횟수, 장소선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신설 2016. 1. 1)

⑤ 협회 및 회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선심성

공약은 금지하며, 이 경우 선관위에서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제16조의2(선거인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배포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회원번호, 휴대폰번호(안심번호 포함), 주소(직장명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되, 선거인명부의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 7. 1)

③ 후보자의 후보등록 후 신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추천자의 회원 또는 대의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선관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시기의 회원 및 선거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 제공 대장(시·도회선거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각서(시·도회선거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출 후 교부 또는 열람해야 한다.

제17조(선거홍보물) ①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2.12.26), <단서삭제 2016. 1. 1>

② 배포기간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다. 단, 선거당일 후보자 등 개인의 배포는 금지하되, 선관위에서 일괄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③ 선관위는 회장 또는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홍보물에 대하여 제규정 등의 위반여부를 심의하고 승인된 홍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한 때에는 이를 선거권자에게 배포한다. (신설 2016. 1. 1)

④ 선관위의 심의결과 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 홍보물의 배포를 금지시키고, 선거홍보물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는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1)

⑤ 선거홍보물의 종류, 규격, 기재 내용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6. 1. 1)

⑥ 회장과 감사 선거 후보자는 본인의 홍보물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1회(수정·변경 없음)에 한해 선관위에 게시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는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 일정 및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후보자에게 안내한다.(신설 2020. 5. 7)

제1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본인 또는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협회와 회원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하

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8.12. 1>

③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왜곡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신설 2016. 1. 1>

④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제19조(금지위반에 대한 신고) ① 이 규정에 의한 금지규정에 대하여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2.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1>

③ 금지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선관위는 관련자에게 출석 및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④ 선관위는 부정선거 예방과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8.12. 1> (개정 2012.12.26, 2016. 1. 1.)

제20조(소견발표)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당일 모든 입후보자에게 소견 발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7. 19, 2020. 10. 27)

② 소견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제 4 장 투표 및 개표

제21조(선출방법)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12.26)

제21조의2(특수한 경우의 선출방법) ①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지시, 방침, 권고 등) 등에 따라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 전 사전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②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는 권역별로 총회 1일전 1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고, 총회 당일 총회 장소에서 개표 후 발표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득표자 확인을 위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투표를 실시한다.(신설 2020. 10. 27)

③ 사전투표의 권역은 서울권(서울·강원·제주), 경기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④ 사전투표 절차 진행시 선관위원장의 역할은 해당 권역별 선관위원이 대신한다.(신설 2020. 10. 27)

⑤ 후보자는 권역별로 후보자의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에 대해 참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⑥ 기타 사전 투표, 개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0. 27)

제22조(선거참관인)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개표의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참관인을 선거권자중에서 선정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 선관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신고된 참관인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한 후 교체 할 수 있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를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투표통지 및 투표용지등) ①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의 제작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투표통지는 총회개최에 대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5. 7)

② 선관위 또는 선거참관인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및 사진촬영장비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선거인의 당해 선거권을 무효로 한다.(신설 2020. 5. 7)

제24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선관위 위원과 선거사무종사원이 함께 개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고, 입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끝난 때에는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입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후 각각 봉투에 넣고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에게 모두 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한 용구나 지정한 방법으로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선관위가 지정한 기재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후보기표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③ 유효표·무효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26조(개표결과의 선포 및 통지등)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투표인수, 투표자의 수, 유효표수, 무효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그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된 자에게 지체없이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개표록을 첨부하여 해당 사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의 이의 제기)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인 1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선관위의 위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선관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승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제28조(당선의 결정과 무효) ① 회장 및 감사의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3. 1. 8)

1. 회장의 당선자 결정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

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총회일에 당선된 것으로 보며, 2인 이상이 입후보하여 비자발적 사유(유고 등)로 단독후보가 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2. 12. 26, 2020. 10. 27)

2. 감사의 당선자 결정은 1인 2기표제에 의한 다득표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등록후보자수가 선출대상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경우에는 총회일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2. 26, 2016. 1. 1, 2020. 10. 27)

② 당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정관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등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선되었을 때. (개정 2008.12. 1)
2. 법원에 의하여 선거무효판결이 있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설 2008.12. 1>, (개정 2016. 1. 1)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설 2008.12. 1>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1)

제29조(선거기록) ① 선관위는 회의록·선거록·투표록·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사무기구에서는 선거인명부·투표지·회의록·선거록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0조(징계) ① 이 규정과 시도회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징계심사 및 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20. 5. 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20. 5. 7)

1. 선거운동시 특정인의 신분·경력·인격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2. 선거권자에게 폭행·협박 또는 유인 하거나, 불법으로 위계·감금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선관위의 위원이나 선거사무종사원에게 폭행·협박한 자
4. 투표소·개표소·투표용지·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시설물·서류 등을 훼손·압류·탈취한 자
5.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명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자 (신설 2020. 5. 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20. 5. 7)

1. 특정후보를 지원하거나 방해한 선관위 위원
2. 특정후보자를 찬성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3.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고 선거권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4.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를 간섭·방해한 자
5.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자나 투표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결과를 비방하는 자
7. 선관위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자 (신설 2016. 1. 1)
8. 선거인명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유포·수령한 자 (신설 2016. 1. 1)
9.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자가 특정인의 당선 및 낙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신설 2016. 1. 1)
10.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자(신설 2020. 5. 7)

④ 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7)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추천서 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중

날인란에 서명한 것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항은 2016년 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136차 이사회 의결일(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12.27, 2014. 7. 1)

선거관리위원 추천서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회원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년 월 일

○ ○ ○ 협 의 회

의장 ○ ○ ○ (직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27, 2014. 7. 1, 2014.12.23)

(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회원번호		2. 회원 가입일	년　월　일
3. 성　　명	(한자)	4. 생년월일	
5. 회원종류	일반회원, 직무회원(상주, 대행, 설계, 감리, 공사)		
6. 직 장 명		7. 전화번호	(자택) (직장)
8. 주　　소	(자택) (직장)		
상기 본인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첨부서류 1 서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7. 1, 2014.12.23)

(　　)선거 후보자 서약서

1. 회원번호		2. 회원 가입일	년 월 일
3. 성　　명	(한자)	4. 생년월일	
5. 회원종류	일반회원, 직무회원(상주, 대행, 설계, 감리, 공사)		
6. 직 장 명		7. 전화번호	(자택) (직장)
8. 주　　소	(자택) (직장)		

상기 본인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　　)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협회의 정관 및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과 공정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12.27, 2012.12.26, 2014. 7. 1)

(　　)선거 후보자 추천서

(대의원 추천용)

추천받는 자	1. 성 명		2. 생년월일	-	
	3. 주 소			4. 회원번호	

위의 회원을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

번호	회원번호	대의원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12.27, 2014. 7. 1)

()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			2. 회원번호	
3. 후보자	성 명		4. 생년월일	-
	주 소			

위의 본인은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12.27, 2014. 7. 1)

선거 참관인 (선정・교체)신고서

1. 선 거 명 :
2. 후보자명 :
3. 회원종류 :
4. 참관인명 :

회원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정・교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서식>

(　　)선거 투표용지

기 호	후 보 자	기 표
1		
2		
3		

(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1.12.27, 개정 2014. 7. 1, 2014.12.2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후보자의 자격확인,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 대한 입후보자(당선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제공, 기탁금 반환, 선거사무와 관련된 연락, 서류보존 등 선거관리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직책),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자격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입후보한 날로부터 선거종료후 1년간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입후보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정기총회에 회장 및 감사로 입후보함에 있어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귀 협회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 □ 부동의

년 월 일

동의자(성명) (서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귀중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2.12.26, 2014. 7. 1)

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서

(선거권이 없는 정상회원 추천용)

추천받는 자	1. 성 명		2. 생년월일	-	
	3. 주 소			4. 회원번호	

위의 회원을 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2월 24일 실시하는 회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시・도회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후보자·후보 예정자 행사 개최 신고서(신설 2020. 5. 7)

1. 회 원 번 호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상기 본인은 회장 및 감사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　　) 후보자·후보예정자로 선거사무소 개설(개소식, 발대식, 출정식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개최내용	
목　　적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제공내용	
기타사항	

*** 비 고**

1. 상기 신고서는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

2. 후보자·후보 예정자 별 선거사무소 관련 행사는 1회에 한하여 개최

3. 행사 개최시 기념품, 식사 제공은 금지하며, 5천원 이하의 다과 제공은 가능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또는 후보 예정자)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